

28. 강사 임용 규정

제정일 : 2019년 12월 4일

개정일 : 2020년 4월 22일

개정일 : 2022년 1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강사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강사는 본교의 교과목 강의와 이에 따르는 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조(자격)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석·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강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한다.

학력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강 사	1	1	2	1	2	3

② 제1항의 자격이 미달되더라도 연구업적이나 현장경험의 전문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아 임용될 수 있다.

제2장 신규임용

제5조(신규임용 절차 및 기준)

① 신규강사의 공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초빙인원 및 초빙분야 확정
2. 초빙공고 및 지원서류 접수
3. 서류심사(기초, 전공)
4. 강의심사
5. 면접심사

② 강사의 초빙인원 및 초빙분야는 연간 시간표를 작성 후 총장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확정한다.

- ③ 강사의 공개채용은 5일 이상 공고하되 채용 강좌명, 배정시간, 채용 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한다.
- ④ 강사의 신규임용은 각 호의 단계를 걸쳐 심사별 평가표 (별표1호~6호)를 활용하여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1. 기초심사: 지원자의 전공과 경력의 채용분야 일치 여부 등
 - 2. 전공심사: 전공에 대한 수준, 학위 및 경력 기간
 - 3. 강의심사: 강의준비의 충실성, 내용의 체계성 등
 - 4. 면접심사: 전공 지식수준, 교수자로서의 자질 등

제6조(임용제청)

-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발령하고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② 임용제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용지원서
 - 2. 학력증명서
 - 3. 경력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4. 연구목록 및 내용(해당되는 경우)
 - 5. 강의계획서

제7조(임용계약)

- ①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임용계약에 의하며,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한다.
- ② 강사의 임용계약시 ‘강사 임용 계약서’ 별표7)호의 서식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 1. 임용기간
 - 2. 임금(방학 중 임금포함)
 - 3. 강의시간 및 근무조건
 - 4. 면직사유
 - 5. 재임용 절차
 - 6. 기타사항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제출된 서류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거짓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의 보완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신규채용 당사자가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2. 당해 강사가 임용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이 모두 폐강되었거나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제8조(임용기간)

- ① 강사의 임용일은 3월1일 또는 9월1일자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강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하되 필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 및 심사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2. 학기 중 교원의 직위해제·퇴직·사망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 ④ 강사는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3년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제3장 재임용

제9조(강사 재임용 절차)

- ① 강사의 재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재임용대상 강사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용 만료통보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 신청서’ 별표 8)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만료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한다.
 3. 교원인사위원회는 ‘강사 재임용 심사 표’ 별표9)와, ‘강의설문지 심사조서(재임용)’ 별표 10)를 작성하여 재임용 심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검증, 심의, 의결 후에 총장에게 추천하여 재임용을 결정한다.
 4. 총장 재가 후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한다.
 5. 당해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강사의 재임용 심사 결과 재임용 대상 후보자 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강사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강사가 재임용 탈락에 대한 소명후에도 탈락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재임용 탈락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재임용 3년이 만료되었을 경우 만료된 사실만 문서로 통지한다.

제10조(강사 재임용 기준)

- ① 강사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사 재임용에 대한 심사는 ‘강사 재임용 심사 기준표’ 별표11)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2. ‘강사 재임용 심사 표’의 5개 항목의 총점을 120점 이상 받아야 재임용 대상 후보자가 될 수 있다.
 3. 120점 이상이 되어 재임용 대상 후보자가 되어도 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검증, 심의, 의결 후 재임용 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1절 복무

제11조(의무 및 권리)

- ① 임용된 강사는 본교의 학사력에 따라 담당과목의 강의와 성적평가 및 수강학생의 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강사가 전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 ③ 강사는 전임교원에 준하는 도서관 및 교내 시설 이용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강의시간)

- ① 강사는 주당 6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 다만, 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6시간 초과 9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매 학기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의 사유로 인하여 2개 학기 연속으로 강의 배정이 불가한 경우 필요한 학기(1개 학기)에만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단,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도 임용기간으로 본다.
- ③ 강사에게 배정된 강의가 폐강되는 경우에는 강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단,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도 임용기간으로 본다.

제13조(보수)

- ①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강사 임용 계약서' 별표7호)에 의거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② 출강시간은 주별 배당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질병, 가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은 강사료를 지급치 아니한다. 단 보강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휴직)

- ① 강사의 휴직은 학교법인 베뢰아카데미학원 정관에 따른다.
- ② 강사의 휴직 기간은 학교법인 베뢰아카데미학원 정관에 따른다.
- ③ 강사의 휴직 및 복직은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명할 수 있다.

제2절 신분보장

제15조(면직사유 등)

- ① 강사의 면직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사립학교법, 교육 관계법령, 본교의 제 규정에서 정한 강사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
 3. 본교 신앙노선에 배치된 언행이나 행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동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는 자
 5.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16조(당연퇴직)

-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② 강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삭 제>

2. 재임용이 거부된 자.

제17조(강사의 관리) 강사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8월 1일 이후에 임용하여 계약한 강사에게 적용하도록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외래교수 관리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